

제22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김길자 의원 발의】



2020. 10. 19.

社 會 建 設 委 員 會
專 門 委 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269호로 2020년 10월 8일 김길자 의원 외 3명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경로당의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 노인의 사회참여 및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프로그램 개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5조의2)

나.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5조 및 제6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입법예고(2020. 10. 8. ~ 10. 12.) :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건은 경로당의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 노인의 사회참여 및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프로그램 개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임.
- 주요 개정 내용은
 - 안 제5조의2를 신설하여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음.
- 우리나라는 2018년에 고령인구 비율이 14%를 넘는 고령사회에 접어들었고 2026년에는 20%를 초과하는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이 예측됨에 따라, 노인의 사회적 소외감, 경제적 곤란 경감과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에 기여하기 위하여 프로그램 개발, 일자리 창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됨 없이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참 고 자 료

1 노인복지법

제23조(노인사회참여 지원)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기회를 넓히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근로능력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 및 취업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노인지역봉사기관, 노인취업알선기관 등 노인복지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1조(고용과 소득보장)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고령자가 최대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연금제도 등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고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국민이 경제적으로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